

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붙임

나. 처분기간 : 2021. 4. 12. 0시 ~ 2021. 5. 2. 24시 (3주간)

다. 처분내용 : 붙임

라. 처분이유

- 정부는 의료 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국민의 수용성·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설정한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

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 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

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름	소속	직급	연락처
김성국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공업사무관	063-280-3797
김종수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시설주무관	063-280-3823

2021. 4. 9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


참고1

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('21.4.12~'21.5.2)

- ※ 적서 볼드체(밑줄)로 작성된 부분은 1.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
- ※ 별도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강화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
- ※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기본방역수칙 준수(참고2)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
① 모임·행사	
사적 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① 직계가족(8인까지)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② 상견례(8인까지) ③ 영유아(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)를 동반하는 경우(8인까지,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), ④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, ⑦ 돌잔치 전문점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
기타 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·행사 실시 가능(단,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필요) ▶ 집회·시위, 대규모 콘서트, 축제,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
②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	
공통수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 등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시설 5종, 홀덤펍 * 알바음식점 자영업등포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▶ 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작성 불가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
실내 스탠딩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섭취 금지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식당·카페(무인카페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 ▶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되,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 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
파티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(개별 방 면적대비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이상)
실내체육시설 (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 직업훈련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결혼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▶ 출입자 명부 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자 전자출입명부(QR체크인 인증 의무화) *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*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제한적 허용, 단 업소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▶ 달 목욕(정기이용권) 신규발급 금지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▶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등
영화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단체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)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이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
백화점·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
구분	비수도권 (거리두기 1.5단계+방역수칙 조정)
마트·상점 (300m ²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 ▶ 주기적 환기·소독
② 기타 다중이용시설	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▶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
전시회장·박람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국제회의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20% 이내로 인원 제한 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인원 제한
사회복지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	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교통시설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마스크 착용
스포츠 관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0% 이내로 관중 입장
등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밀집도 2/3 준수
종교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 30% 이내 인원 참여 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
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- 밀폐·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(콜센터, 유통 물류센터)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-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

참고 2 기본방역수칙 적용 설명

- ① **(마스크 착용)** 실내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,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
- ② **(출입자 명부관리)**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,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
- 단, △유형시설(유흥주점·단란주점·감성주점·헌팅포차),△ 콜라텍, △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
- ③ **(소독·환기 강화)** 모든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
- ④ **(음식섭취 금지)**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(식당·카페 등),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
- ⑤ **(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)** 다중이용시설·사업장의 모든 이용자·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
- ⑥ **(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)**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
- ⑦ **(방역수칙·이용가능 인원 게시·안내)**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

<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>

구 분	실내 다중이용시설	비수도권(1.5단계)
중점 관리시설	유흥시설 5종	8㎡당 1명
	홀덤펍	8㎡당 1명
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4㎡당 1명
	노래연습장	4㎡당 1명
	식당·카페	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50㎡ 이상)
일반 관리시설	실내체육시설	4㎡당 1명
	목욕장업	4㎡당 1명
	오락실·멀티방	4㎡당 1명
기타	전시회·박람회· 국제회의	4㎡당 1명
	경륜·경마·경정	수용인원 20% 이내
	카지노	수용인원 20% 이내
	종교활동	좌석 수 30% 이내